

국민안전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 
현황 조사

국회입법조사처  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

입법조사관 배재현

Tel. 788-4563/Fax. 788-4569

E-mail: baejh@nars.go.kr



# 요 약

## 질의 요지

### 국민안전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 조사

(회답일시 2016. 12. 26)

#### ■ 조사·분석 방향

- 국민안전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 조사

#### ■ 주 요 내 용

- 국민안전처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에 관한 현황자료를 요청하여, 국민안전처 소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소방기본법」, 「민방위기본법」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의 법적근거규정 및 수립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음
-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람

# 목 차

1. 개요 .....	1
2. 국민안전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 .....	1
1)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.....	1
2)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.....	2
3)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.....	3
4)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.....	4
5) 소방업무 종합계획 .....	4
6) 민방위 기본계획 .....	5
7)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.....	6
8)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.....	7
9)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.....	9
10)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.....	10
11) 구조·구급 기본계획 .....	11

참고문헌 /

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.  
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1. 개요

- 국민안전처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에 관한 현황자료를 요청하여, 국민안전처 소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소방기본법」, 「민방위기본법」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의 법적근거 규정 및 수립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음

## 2. 국민안전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현황

### 1)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

- 법적근거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2조(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)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26조(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)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<p>제22조(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"이라 한다)의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(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.</p> <p>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</p> <p>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, 제24조의 시·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은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.</p> <p>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
<p>제26조(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)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(이하 "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다음 각 호의 대책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 재난에 관한 대책</p>

2. 생활안전, 교통안전, 산업안전, 시설안전, 범죄안전, 식품안전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

③ 삭제 <2014.2.5.>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수립단위

○ 5년 단위로 수립

## 2)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

법적근거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의2(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)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8조의2(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시·군·구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·도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종합계획과 시·군·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재난 예보·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
2.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
3. 종합적인 재난 예보·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각각 시·도종합계획과 시·군·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.>

⑤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시·도종합계획과 시·군·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⑥ 시·도종합계획, 시·군·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수립단위

○ 5년 단위로 수립

### 3)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

#### □ 법적근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1조의2(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9조의5(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)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<p>제22조(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"이라 한다)의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(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.</p> <p>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</p> <p>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, 제24조의 시·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은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.</p> <p>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
<p>제79조의5(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)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(이하 "개발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재난·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</li> <li>2. 재난·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</li> <li>3. 재난·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·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</li> <li>4.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·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</li> <li>5. 학교·학술단체·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난·안전기술의 연구 지원</li> <li>6. 재난·안전기술정보의 수집·분류·가공 및 보급</li> <li>7. 산·학·연·정 협동연구 및 국제 재난·안전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</li> <li>8. 그 밖에 재난·안전기술의 개발과 재난·안전산업의 육성</li> </ol> <p>② 국민안전처장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·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·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국민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</p>

수립단위

- 5년 단위로 수립

#### 4)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

법적근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34조의9(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)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제34조의9(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)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수립단위

- 1년 단위로 수립

#### 5)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

법적근거

- 「소방기본법」 제6조(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
- 「소방기본법시행령」 제1조의2(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·시행)

「소방기본법」
제6조(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.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, 소방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 3.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. 소방전문인력 양성 5.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

- 6.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(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한다)
- 7.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세부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

- 제1조의2(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「소방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재난·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
  2. 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수립단위

- 5년 단위로 수립

## 6) 민방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

□ 법적근거

- 「민방위기본법」 제10조(민방위 계획의 종류) 및 같은 법 제11조(기본계획)
- 「민방위기본법시행령」 제12조(기본 계획)

「민방위기본법」

제10조(민방위 계획의 종류)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, 집행 계획, 특별시·광역시·도 계획(이하 "시·도계획"이라 한다)과 시·군·구 계획으로 나눈다.

제11조(기본 계획)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



위협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
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「민방위기본법 시행령」

제12조(기본 계획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 계획의 수립방향
2. 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사태 시 조치사항 등 기본 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수립지침

② 기본 계획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안보·재난·국민인식 등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
2. 기본 계획의 목표
3. 민방위대 편성·교육 및 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
4.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, 통제, 수습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수립단위

- 5년 단위로 수립

## 7)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

□ 법적근거

-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7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
-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)

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

제7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
2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
3.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
4.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
5.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6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(이하 "연도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

- 제3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)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"정기실태조사"라 한다)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정기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소방공무원의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
  2.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(이하 "소방전문치료센터"라 한다)의 지정·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
  3.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소방공무원 진료,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
  4. 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
  5.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6.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사항
  7.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
-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□ 수립단위

- 5년 단위로 수립

## 8)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

□ 법적근거
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3 (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의2~제6조의5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- 제2조의3(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

- 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.
  -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1.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   2.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·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    3.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·교육에 관한 사항
    4.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
    5.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·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  6.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
   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
  -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한다.
  -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, 시행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⑧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6조의2(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)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조의3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제6조의3(기본계획의 내용) 법 제2조의3제3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화재현황,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
2. 소방시설의 설치·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

제6조의4(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2.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의5(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(이하 "세부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

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세부 집행계획
2.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
## □ 수립단위

○ 5년 단위로 수립

## 9)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

### □ 법적근거

○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(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

####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제5조(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·물적 피해의 감소, 안전기준의 개발,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,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
2.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
3.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
4.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5. 다중이용업소의 적절한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·개발
- 5의2.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
- 5의3.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(이하 "책임보험전산망"이라 한다)의 구축·운영
- 5의4.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
6.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(이하 "연도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□ 수립단위

- 5년 단위로 수립

### 10)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

□ 법적근거

-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
-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

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<p>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</li> <li>2.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</li> <li>4.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소방장비의 개발,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</li> <li>8. 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ol> <p>③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<p>제3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</p> <p>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</li> <li>2. 시·도지사</li> <li>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</li> <li>4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</li> <li>5.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</li> <li>6. 「소방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</li> <li>7.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</li> <li>8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</li> <li>9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</li> <li>10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</li> </ol>

□ 수립단위

- 5년 단위로 수립

## 11) 구조·구급 기본계획

□ 법적근거

-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6조(구조·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
-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구조·구급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

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
<p>제6조(구조·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·구급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구조·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</li><li>2. 구조·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,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</li><li>3. 구조·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</li><li>4. 구조·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</li><li>5. 구조·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</li><li>6. 구조·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</li><li>7. 그 밖에 구조·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li></ol> <p>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·구급 집행계획(이하 "집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
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<p>제2조(구조·구급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·구급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구조·구급정책협의회(이하 "중앙 정책협의회"라 한다)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본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구조·구급 시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</p>

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수립단위

○ 5년 단위로 수립



국회입법조사처  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